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규정 제414호

서울괴학기술대학교 행정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7. 12. 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교육이념을 실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학교의 행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제안제도"란 본교 구성원으로부터 대학 운영이나 업무의 개선에 관한 창의적인 의견을 제안받아 심사하여 채택하고, 그 제안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 2.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이하 '코러스'라 한다)이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교육정보화의 일환으로 대학 자원의 종합적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모든 부서와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은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에 관하여 본교의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책무) 총장은 본교 행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교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대학소통위원회

제6조(설치) 본교 의사결정과정에서 본교 구성원들 간에 소통을 통하여 소모 적인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 학소통위원회를 둔다.

제7조(기능) 대학소통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1. 교내외 의견수렴, 소통,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 2. 본교 구성원 간의 갈등 해결과 화합에 관한 사항
- 3. 본교 의사결정 과정에서 위원이 대학소통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발의한 사항
- 4. 그 밖의 대학소통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구성) ① 대학소통위원회는 위원장, 당연직위원, 일반직위원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당연직위원은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국장, 대외협력본부장으로 구성한다.
- ③ 일반직위원은 교원 2명, 직원 2명, 조교 1명, 학부생 1명, 대학원생 1명, 동문 1명, 지역인사 1명으로 구성한다.
- ④ 대학소통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

- 제9조(일반직위원의 추천 절차) 일반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추천 절차에 따라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교원 : 본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사람을 교수평의회에서 추천
- 2. 직원 : 본교의 직원을 대표하는 사람을 공무원직원단체, 대학회계직원단 체에서 추천
- 3. 조교: 본교의 조교를 대표하는 사람을 조교단체에서 추천
- 4. 재학생 : 본교의 재학생을 대표하는 사람을 학생처, 대학원에서 추천
- 5. 동문 : 본교의 동문을 대표하는 사람을 총동문회에서 추천
- 6. 지역인사 : 본교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본교 소재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그밖의 본교 우영에 이바지하는 사람을 관련 부서에서 추천
- 제10조(일반직위원의 임기) ① 일반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있다.
- ② 총장은 일반직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새로이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대학소통위원회를 대표하고, 대학소통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무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대학소통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

다.

- ② 대학소통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대학소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생지원과 주무 팀장이 된다.

제3장 행정의 투명한 운영

- 제14조(의견수렴)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교의 중 요 정책을 결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 다.
- 1. 본교 학칙 개정에 관한 사항
- 2. 본교 규정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3. 본교 중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4. 본교 학사구조개편 추진에 관한 사항
- 5. 그밖에 총장이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의견수렴 기간은 의견수렴을 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 ③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토한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과 제3항에 따른 결과의 공지는 본교 전산망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 제15조(설명회 개최) ① 총장은 본교 행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교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총장은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설명회 5일 전에 본교 구성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 ③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설명회 결과를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토한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공지는 본교 전산망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6조(회의결과의 공개) ① 총장은 본교 행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공개한다.
- 1. 교무회의
- 2. 재정위원회
- 3. 대학회계예산편성소위원회
- 4. 등록금심의위원회
- 5. 그밖에 총장이 회의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위원회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핰 수 있다.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
-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개인정보
- 3. 해당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 ③ 제1항에 따른 회의결과의 공개는 본교 전산망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

다.

④ 총장은 본교 구성원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제1항에 따른 회의결과 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장 행정의 효율적 운영

제17조(주요사업의 업무절차) ① 본교의 대학이념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요사업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본교의 대내외 여건 분석
- 2. 대학 구성원 및 수요자의 의견수렴, 설문조사
- 3.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 4. 만족도 조사 등 사업의 추진 성과 분석ㆍ평가
- 5. 사업 계획의 보완ㆍ개선
- ② 제1항에 따른 주요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업
- 2. 교육과정 편성 · 운영에 과한 사업
- 3. 강의평가에 관한 사업
- 4. 수업 관리(수업기간 준수, 학생 출결관리, 휴강 및 보강, 성적부여 등)에 관한 사업
- 5. 학생 학습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업
- 6. 진로 및 심리 상담에 관한 사업
- 7. 취업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

- 8. 지역사회 협력 · 기여에 관한 사업
- 9. 그 밖의 총장이 중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
- 제18조(제안제도의 운영) ① 총장은 본교 행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교 구성원으로부터 대학 운영이나 업무의 개선에 관한 창의적인 의견을 제안받아 심사하여 채택하는 제안제도를 운영한다.
- ② 제안대상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일하는 방식의 개선 및 능률에 관한 사항
- 2. 사업(업무) 운영에 따른 경비절감에 관한 사항
- 3. 본교 구성원의 사기 진작, 개인 및 부서 간의 관계 개선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본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
- ③ 총장은 본교 구성원으로부터 행정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제안 받아 심사하여 채택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 ④ 총장은 본교 구성원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제1항에 따른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정보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⑤ 총장은 제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안서의 접수, 심사, 보상 등의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 제19조(코러스의 활용) ① 본교 교직원은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코러스를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1.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 2. 대학회계 예산 편성에 관한 업무

- 3. 대학회계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
- 4. 인사관리에 관한 업무
- 5. 급여관리에 관한 업무
- 6. 전자문서의 기안·결재·등록·시행·접수·배부 등에 관한 업무
- 7.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 ② 총장은 코러스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교직원 교육훈련, 본교 타 시스템과의 연계, 데이터 검증 및 신뢰고 제고, 주기적 점검, 사용자 만족도 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위원회 설치 · 운영 통칙

- 제20조(기본원칙) ① 총장은 본교에 두는 모든 위원회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총장은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유사·중복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소멸된 위원회는 폐지하여야 한다.
- 제21조(위원회의 구분) 본교에 두는 위원회는 설치 근거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상위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
- 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에 직접 설치 근거를 둔 위원회
- 3.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39조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
- 제22조(위원회의 구성) ① 본교에 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 1. 상위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 : 해당 상위 법령에 따라 구성
- 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에 직접 설치 근거를 둔 위원회 : 여성위원, 교직원위원, 학생위원을 포함하여 구성
- 3.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39조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 : 여성위원, 교직원위원, 학생위원을 포함하여 구성
- ② 총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성격상 교직원 또는 학생위원이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③ 총장은 본교에 두는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부칙(제414호, 2017. 12. 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